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國際民事司法公助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 송달 실효성 확보〉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387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절차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8
IV . 관계기관 의견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명
2. 제 안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

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절차

재판의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소장 등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함. 외국으로의 송달은 사법공조를 통한 송달촉탁 방식¹⁾으로 이루어지며, 송달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을 외국의 당국이나 관할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는 방식(간접실시방식)과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로 하는 방식(직접실시방식)으로 구분됨.²⁾

「국제민사사법공조법」³⁾은 송달촉탁을 위한 사법공조의 기본법에 해당함. 다만, 국제사법공조와 관련한 국제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⁴⁾ 이와 관련한 국제법규는 헤이그송달협약⁵⁾과 헤이그 증거조사협약⁶⁾ 등 각국과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 있음.⁷⁾

1)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p.1958

3) 하위규범은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 및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4)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5)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발효일 1969. 2. 10., 국내발효 2000. 8. 16..

6)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발효일 2010. 2. 12., 국내발효 2010. 2. 16

7) 우리나라가 국제송달공조를 위해 양자조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자협약에 가입한 사례: 5개의 양자조약(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과 2개의 다자조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송달협약).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이러한 외국으로의 송달촉탁은 외국(피촉탁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 등에 대하여 하는 것(직접실시)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간접실시)이 통상적인 방법임. 이 중 간접실시 방식은 외국 관할 법원에 촉탁하는 방식과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됨.⁸⁾

헤이그송달협약을 비롯하여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등의 양자조약에서는 체약국이 지정한 중앙당국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식을 채택함. 헤이그송달협약은 송달을 촉탁하는 국가(촉탁국) 내부의 송달촉탁 경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⁹⁾ 법원행정처는 중앙당국방식의 촉탁은 외교부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¹⁰⁾하고 있음.

이에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등의 촉탁 경로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경우 외교부를 거치지 않으나, 외국의 관할법원에 촉탁하거나 외국(촉탁국)에 파견된 대사·영사에 직접 하는 경우 외교부를 거쳐야 함.

8)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4조 (송달촉탁의 경로) ①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함) →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6) 피촉탁국의 외교부 → (7)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③ 영사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9)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3조 촉탁국의 법상 권한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은 인증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수속없이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는 요청서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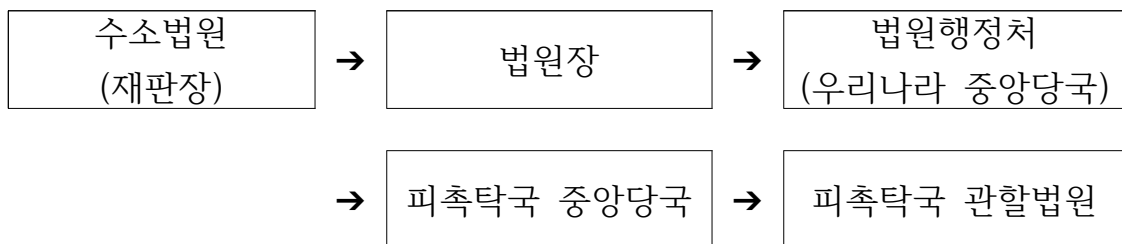
송달되는 문서 또는 그 사본은 요청서에 첨부된다. 요청서와 문서는 각각 2부씩 제공되어야 한다.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p.1982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송달촉탁 등 중앙당국방식의 촉탁에 있어서는 외교부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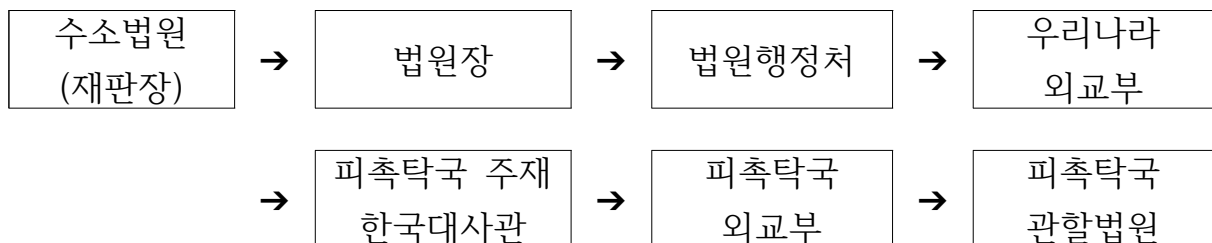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다자협약 및 양자조약이 적용되어 각국의 중앙당국을 통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의 경로를 살펴보면, “(1) 수소법원의 재판장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4) 피촉탁국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 (5) 피촉탁국 관할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됨.¹¹⁾

[송달촉탁 경로(중앙당국)]



다음으로, 외교상 경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외국(피촉탁국) 관할 법원 및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에 대한 송달 촉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 관할법원에 대한 촉탁은 “(1) 수소법원의 재판장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6) 피촉탁국의 외교부 → (7) 피촉탁국의 관할법원”의 경로를,

[송달촉탁 경로(관할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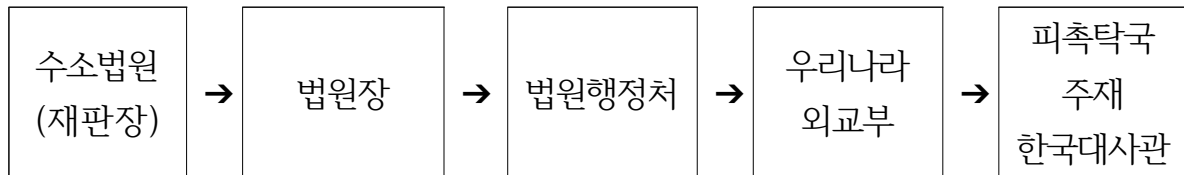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p.1975

간접송달방식 중 중앙당국에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의 촉탁 방식인 직접송달방식(영사송달방식)과 간접송달방식 중 외교경로를 통해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에 대한 송달 촉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1) 수소법원의 재판장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로를 거치게 됨.

[송달촉탁 경로(영사)]



이와 같이 협약 및 다자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제규범이, 협약 및 다자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상호주의¹²⁾를 고려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송달촉탁이 이루어지나, 송달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국제규범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피촉탁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 등에 대한 촉탁(직접실시)이 가능함.¹³⁾¹⁴⁾

12)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촉탁의 상대방) ①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1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5조 영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 (i) (생략)

(j)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

특히, 협약 및 다자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피촉탁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에만 영사를 통한 송달이 가능하나,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에 대하여는¹⁵⁾ 헤이그송달협약 제8조에에서 “각 계약국은 강제력의 사용없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재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촉탁국의 법령 등과 관계없이 영사송달을 활용할 수 있음.¹⁶⁾¹⁷⁾

한편, 참고로 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 가입시 협약 제8조 단서에 따른 반대선언을 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자국민 외의 자에게 송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해 송달하는 경우에도 그 송달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음.¹⁸⁾

15)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8조 각 계약국은 강제력의 사용없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재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촉탁국의 국민에게 그 문서가 송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영역안에서의 그러한 송달에 반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16) 외국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할법원 등에 촉탁하고, 외국거주 내국인(「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한정)에 대하여는 외국 주재 대사·공사·영사에 대하여 촉탁하게 됨.

17)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재판예규 제1864호, 시행 2023.11.23]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영사 송달촉탁”이라 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촉탁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

③ ~ ⑤ (생략)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p.1964

우리나라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할 당시 협약 제8조에 따른 반대선언을 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자국민 이외의 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바 있다. 물론 헤이그 송달협약은 당사자간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원래 국제관계의 기본바탕은 상호주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접수국이 협약 제8조에 따른 반대선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송달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국의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6條(囑託의 經路) ①・② (생 략)	第6條(囑託의 經路)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판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촉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¹⁹⁾를 의미하며, 실무상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²⁰⁾을 의미함.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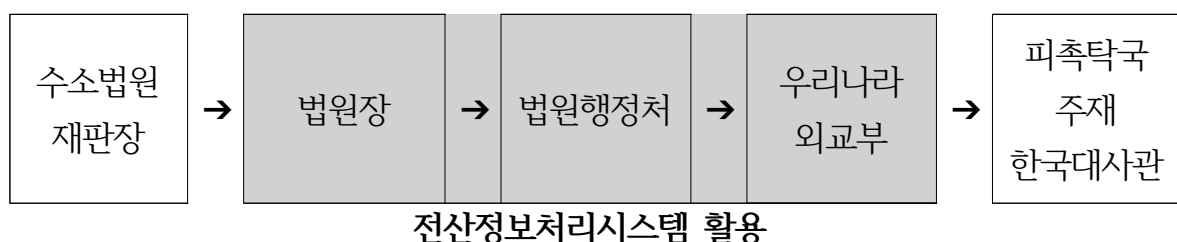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서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²¹⁾에 따른 촉탁), 수소법원 재판장이 전자소송 포털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송달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1) 수소법원의 재판장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송달촉탁 경로에서,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단계를 생략하고,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곧바로 피촉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송달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달촉탁 경로(국제민사사법공조법-대한민국 국민)]



20)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2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촉탁의 상대방) ① (생략)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통상 최소 2~3개월[직접실시(영사송달)방식]에서 6개월~1년[간접실시(외국 관할법원)방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촉탁 경로를 단축하여 소송의 신속을 도모하고 사법비용을 절감²²⁾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법원행정처는 2026년 4월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이하 “공조예규”)」를 개정하여 전자문서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촉탁서 등 송부(이하 “전자송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대한 전자송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송부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측면임.

중전의 공조예규는 수소법원 재판장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촉탁서와 송달될 문서(소장 부분, 변론기일 소환장 등) 실물을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음.

이에 촉탁서 등을 받은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에 촉탁서 등 송부를 의뢰하며, 외교부는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및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외교행낭(국제우편 방식)으로 재외공관에 촉탁서 등을 발송하게 됨.²³⁾

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2021., p.4

국제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소송의 신속을 도모하고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하는 송달의 경우, 피촉탁국에 따라 송달의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송달의 소요기간은 통상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중앙당국을 통한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외교경로를 통한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메일, 팩스, 보안전산망 등을 비롯한 전자적 수단은 즉각적인 송달이 가능하게 하므로 국제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23)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훈령 제00248호, 2025. 9. 11. 일부개정)」

그러나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축탁서 등 송달문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자파일(pdf)로 송부하도록 공조예규가 개정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의 업무협조에 따라 현재 미국·일본·호주 등 8개 재외공관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직접 전자적 방식으로 축탁서 등을 송부한다고 설명함.²⁴⁾

그런데,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축탁의 경로를 “(2) 소속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법원행정처의 장은 축탁서 등 관계 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중앙당국, 재외공관 등 수탁기관에 송부할 것을 외교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송달축탁을 전제하지 않고 있음.²⁵⁾

제8조(발송방법) ① 재외공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외교행낭 취급자가 공관별 발송일정에 따라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장에 의거하여 발송한다.

② (생략)

③ 타 부처(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중 ②항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내용에 따라 등기 또는 보통우편으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증거서류를 비치한다.

24)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재판예규 제1952호, 시행 2026.04.01.]

제3조 (송달축탁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이 정하는 송달을 축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축탁서(양자조약의 경우 축탁요청서)를 작성한다.

⑤ 제4항의 축탁서 등은 해당사건 목록[전산양식 A2605]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시스템(보안 설정: 영구, 비공개 4·6호)을 통하여 법원행정처[(담당: 국제심의관)(이하 “법원행정처”라 한다)]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이 경우 축탁서(축탁요청서), 목록 및 송달될 문서(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는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작성·첨부하여 송부한다.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문서의 실물과 함께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25)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축탁의 경로) ① 외국으로의 축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축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양자조약에서는 촉탁국 내부의 송달촉탁 경로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이 송달주체가 될 재외공관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 촉탁서 등을 송부하더라도 협약이나 조약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 등의 체약국인지와 관계없이, 재외공관에 대한 송달촉탁 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인바,²⁶⁾ 수소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재외공관에 대하여 직접 촉탁서 등 송달문서를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개정안에서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직접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송달촉탁 경로 중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를 생략하고 있다는 측면임.

먼저 법원행정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2) 소속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를 모두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자송부를 시행하고 있는 근거인 공조예규 및 실무에서는 여전히 (3) 법원행정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2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p.1975

간접송달방식 중 중앙당국에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의 촉탁 방식인 직접송달방식(영사송달방식)과 간접송달방식 중 외교경로를 통해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수소법원의 촉탁서 등을 법원행정처에 집중시켜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촉탁서 등을 직접 재외공관에 송부하는 경우 송달촉탁 경로가 보다 간소화됨에 따라 전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법원행정처는 촉탁서 작성업무의 통일, 촉탁서가 헤이그 송달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당국 방식의 송달촉탁 시에도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직접 촉탁서 등을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촉탁서 등을 모아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⁷⁾

다음으로 송달촉탁 경로 중 외교부를 거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촉탁서 등 관계서류를 실물로 송부하는 경우 외교행낭을 통한 발송이 이루어졌으므로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하였음.²⁸⁾

그러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수신의 경우, 외교부를 경유할지 법원행정처가 직접 재외공관에 송부할지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과 외교부 등의 외교통신시스템 등을 활용하였을 때, 소송 당사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촉탁서 등 소송서류가

2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p.1982

28)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2023.12. 4., 제정)」

제9조(외교행낭 이용 및 제한) ① · ② (생략)

③ 재외공관 및 타 기관(외교부 산하기관 포함)이 제②항에 의하여 문서 등을 외교행낭을 통하여 상호 수발하는 경우에는 본부 내 관련 실·국(과·팀)에 문서 사본을 배포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암호화,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²⁹⁾ 등 적절한 보안요건을 갖추어 송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행법에서 외국으로의 촉탁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외교활동의 일환인 사범공조 과정을 외교부장관이 전반적으로 관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재판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국의 대사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민사사범공조법」과 함께 국제사범공조 절차를 규정한 「국제형사사범 공조법」³⁰⁾과 「범죄인 인도법」³¹⁾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제민사사범공조법」을 타 국제사범공조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외국으로의 촉탁시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일부개정]」

30) 「국제형사사범 공조법」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1) 「범죄인 인도법」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 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IV. 관계기관 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입법 취지와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은 외국으로의 송달촉탁 중 영사송달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교상의 경로로 촉탁하는 방식(영사송달 방식, 관할 법원 송달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촉탁의 경로) ①·② (생략)	제6조(촉탁의 경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u>대사·공사 또는 영사</u> 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 서류를 <u>전송</u> 할 수 있다.	③ ----- 제5조에 따라 촉탁하는 경우에는----- ----- ----- 피촉탁국 주재 대사----- -----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054